

5.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

< 사업목적 >

- 실외사육견, 민간보호시설 보호견 등의 중성화 지원을 통한 유실·유기 동물 발생 예방, 개체수의 효율적 관리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- 사업량 : 1,902마리
- 사업비 : 760,800천원(국비 152,160, 시군비 532,560, 자부담 76,080)
 - 지원비율 : 국비 20%, 시군비 70%, 자부담 10%
 - 지원단가 : 마리당 400천원
- 사업시행 : 26개 시·군
- 지원대상
 - ① 농촌지역 등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(개)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
 - ② 유실·유기견 등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
 - ※ ‘농촌지역’의 분포가 적은 시·군에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시·군에서 판단하여 ‘공업지역’ 등 유기·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. 단, 실외에서 사육되어야 함.
 - ※사업대상 주소지의 용도지역 확인은 ‘토지이음(www.eum.go.kr)’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
- 지원내용 : 농촌지역 등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(개)*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보호견에 대한 중성화수술비 및 제반 비용**
 - * (실외사육견)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,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(개)로 하되, 수의사 판단하에 탄력적으로 운영
 - ** (제반 비용) 동물등록비 및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, 인건비 등 제반 비용
- (지원조건) 단가 마리당 400천원 한도(암컷 기준, 국비 20%, 지방비70, 자부담10)
 -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(내장형) 병행
 - ※ 마리당 사업비 단가 내에서 암·수컷의 중성화 수술비 및 제반 비용 지원
 - 암·수컷의 수술비 및 제반 비용은 단가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
 - ※ 암컷 우선 지원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컷도 지원 가능
 - ※ 자부담 분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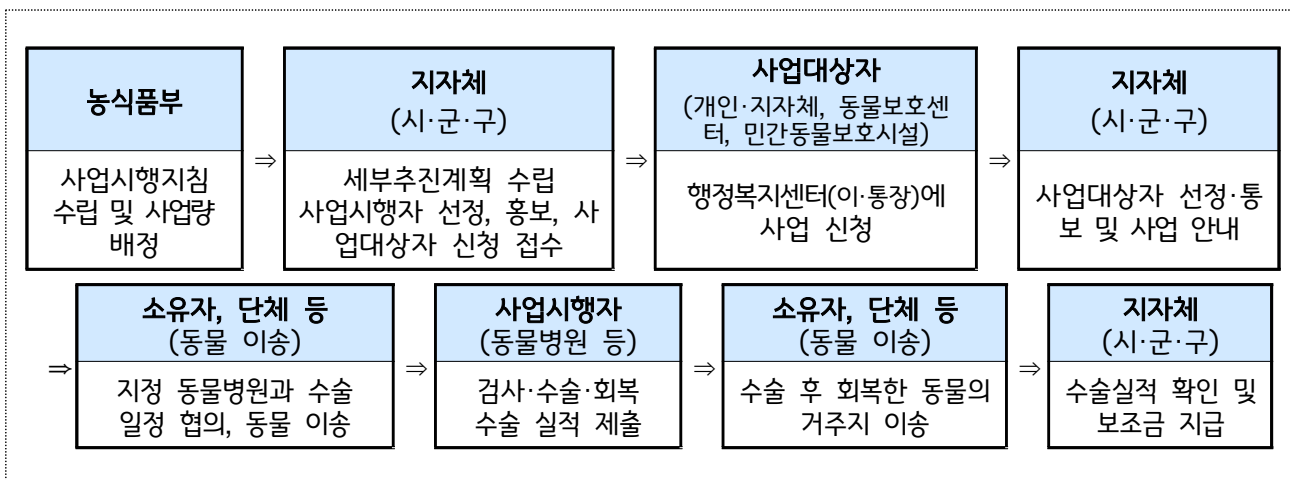
○ 마리당 사업비 지급단가 산출(예시)

체중 구분	암 컷 중성화수술	수 컷 중성화수술	비 고
10kg 미만	270천원 + 30천원 = 3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180천원 + 20천원 = 2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제반 비용 (동물등록비, 차량운행비, 인건비 등), 검사 비용 모두 포함된 금액임.
10kg 이하 15kg 미만	315천원 + 35천원 = 35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225천원 + 25천원 = 25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
15kg 이하 25kg 미만	360천원 + 40천원 = 4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270천원 + 30천원 = 300천원 (보조금) + (자부담) = (총 액)	

※ 검사 결과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, 동물병원에서는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 등 요구할 수 없고, 시·군에 증빙자료 제출하여 그 비용을 개체별 10만원 한도로 청구 가능

※ 개의 체중이 25kg 이상인 경우, 담당 수의사의 수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 진행 가능

□ 사업추진 방식



○ (지자체) 각 시·군·구 여건에 따라 ‘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’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

- 공고를 통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,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, 수의사 단체·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*로 지정

* 사업신청 마릿수, 지자체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물등록 대행이 가능한 사업시행자를 다수 지정 가능

*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해당 시·군·구 내 위치할 필요는 없으며, 여력이 되어 여러 시·군·구에 중복 선정될 경우, 여러 시·군·구에 걸쳐 사업 추진 가능

-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개별 선정하거나, 사업의 효율성 및 중성화 효과를 위해 마을별로 집단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

- * 지자체별로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 중인 맹견 소유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고령자,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
-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구당 지원 마릿수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사업 시행
-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또는 자원봉사자, 지자체 동물구조 요원의 협력을 통해 병원 이송 등을 대행할 수 있음
-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, 수의사 단체·협동조합 등이 수술 장비 등을 갖춰 소유자 인근에 방문, 중성화 수술을 실시할 수 있음. 다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 등은 아래 ‘찾아가는 중성화’ 관련 유의사항을 따름
- * 단, 실제 ‘찾아가는 중성화’ 수술을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동물진료업이 가능한 수의사여야 함
- 사업 완료 후 실적(정산)보고서 제출(서식 8)

<< ‘찾아가는 중성화’ 관련 유의사항 >>

- **(기본 원칙)** 출장 진료는 응급상황 대응 미흡 시 의료사고 위험이 있고,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중위생 문제가 있음. 따라서 **반려동물은 동물병원 내 진료**가 원칙
 - 다만 동물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 등 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**공익 목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‘찾아가는 중성화’ 수술** 추진
- **(대상 지역)** 구체적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(島嶼)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·면 등 **‘동물등록 제외 지역’***에 한함
 - * 동물등록 제외 지역은 해당 시·도 조례를 참고
 - 다만 **‘동물등록 제외 지역’이 아니더라도** 인근에 중성화 수술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**지역 수의사회** 등 **협의를 거쳐 ‘찾아가는 중성화’ 수술을 추진**할 수 있음
- **(수술 전 안내)** 중성화 수술 등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**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행**하는 것이 **바람직함**을 충분히 설명
 - 특히 중성화 수술 전 수의사법 제13조의2에 따른 **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**을 실시하고, **중성화수술·마취 등 동의서**를 받아야 함

- (소유자) 사육장소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·접수 또는 마을대표(이장·통장 등)를 통해 마을별 신청 가능
 - 사업 신청 시 지정 동물병원 직접 방문(또는 이송 대행) 또는 ‘찾아가는 중성화’(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) 중 택일
 -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신청서(서식 2) 및 수술·마취동의서(서식 3)
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
*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사회복지 수혜 여부, 주소지 등 확인

- 실외사육견 사육 장소가 소유자 거주 장소와 다른 경우*, 사육 장소에 대한 실외 사육 여부 확인,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확인 (토지·상가·공장 등에 대한 소유권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)

* 실외사육견 사육 장소의 관할 시·군·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

○ (지정 동물병원) 신청자별 수술 날짜를 협의 후 중성화수술 등 시행

- 사업대상자와 중성화수술 사전 예약 및 안내
- 수술 전 동물에 대한 건강 상태 등을 검사*하고,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수술 제외, 다만 임신으로 진단된 경우 출산 후 수술 실시

* 수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시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

- 수술 전 사업대상자에게 수술 과정, 수술 전·후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수술·마취 동의서(서식 3) 작성 안내
- 미등록 동물일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(내장형) 후 수술
- 수술 후 보호 및 후처치 등 관리 철저, 보호자 인계 시 퇴원 안내(서식4)
-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중성화수술에 따른 동물병원 이송 협조를 받은 경우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이송 전 소유자로부터 수술·마취 동의서(서식3)를 받아 동물병원에 전달하고 퇴원안내서는 소유자에게 전달
- 지원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진료기록(진료차트 등) 작성·보관 철저
- 관련 증빙서류(서식 3, 서식 5, 서식 6, 서식 7)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중성화 수술비 청구
- ※ 대한수의사회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대한수의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 추진

○ (‘찾아가는 중성화’ 사업자) 신청자별로 날짜를 협의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중성화수술·후처치 등을 시행

- 다만 수의사 판단에 따라 현장 수술이 어려운 경우, 해당 개체를 별도 준비된 장소에 이송하여 수술·후처치 시행 후 회복기간 등을 거쳐 소유자(주소지, 거주지 등)에게 돌려보냄

- 이외 중성화수술 전 건강 상태 검사, 주의사항 안내, 동의서 작성, 동물등록, 퇴원 안내, 진료기록 작성·보관, 수술비 청구 등 사항은 위 ‘지정 동물병원’ 절차에 준하여 적용

□ 행정사항

- 시·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('25년 1~2월)
- 동물병원 등 사업수행자 선정('25년 1~2월) 및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 등 신청 접수('25년 연중)
- 사업 정산 보고('26년 1월 31일까지)
-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, 거짓 또는 부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,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